

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31호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고흥군 연안에 방치된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정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안 제4조, 안 제5조)
- 라. 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안 제6조)
- 마.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붙임 1]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관할 공유수면에서 해양오염 및 선박 안전 사고를 유발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방치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
2.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3.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
4.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 관할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현황, 위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철거, 이전, 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방치선박 등 조치와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 ⑦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붙임 2**전라남도 내 유사 조례 제정 현황**

연 번	자치단체	조 례 명	공 포 일 자	소 관 부 서	비 고
계		1개			
1	목포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2025. 10. 20.	해양개발과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 1항 중 1호, 2호

3. 미첨부 사유(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 성 자	해양개발과장 신 대 식
연 락 처	061-830-5530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